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86.4	-	2,186.4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69.8	-	269.8	12.3	-
	도 로	269.8	-	269.8	12.3	-
	공공청사 (12지구 공동)	(273.0)	-	(273.0)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획지(대지)		1,916.6	-	1,916.6	87.7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86.4	-	2,186.4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86.4	-	2,186.4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대	55,151 (2,186.4)	-	-	1973.8.1 (건고 제317호)	집단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내 편입면적임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구 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원)(B)	비용부담액(원) (C)	분담금 추산액 (A+B+C)	분담률 (%)
		금액(원)(A)	비율(%)				
합 계		96,813,777,480	100.00	13,379,998,085	194,306,424,435	304,500,200,000	100.00
토 지 등 소 유 자	을지로3가 95-7 외 5필지	53,003,120,720	54.75	7,325,214,161	-	60,328,334,881	19.81
	을지로3가 95-19 ①	1,561,475,500	1.61	215,801,302	-	1,777,276,802	0.58
	을지로3가 95-19 ②	1,561,475,500	1.61	215,801,302	-	1,777,276,802	0.58
	입정동 268-2	1,090,000,000	1.13	150,641,761	-	1,240,641,761	0.41
	을지로3가 95-12	9,423,105,000	9.73	1,302,305,624	-	10,725,410,624	3.52
	을지로3가 95-13 외 1필지	2,572,066,000	2.66	355,468,396	-	2,927,534,396	0.96
	을지로3가 95-13 외 3필지	26,092,834,760	26.95	3,606,119,792	-	29,698,954,552	9.75
	입정동 246-1	846,300,000	0.87	116,961,580	-	963,261,580	0.32
	을지로3가 335-1	663,400,000	0.69	91,684,169	-	755,084,169	0.25
	사업시행 예정자	-	-	-	194,306,424,435	194,306,424,435	63.81

※ 상기 권리가액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자산(토지등소유자별) 및 종후자산(신축건축물)의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구 분		권리가액(원)	분양 예정가(원/㎡)		분담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합 계		304,500,200,000	9,508,000	9,853,000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 (시설별 분양 예정가 × 분양받은 면적)
토 지 등 소 유 자	을지로3가 95-7 외 5필지	60,328,334,881			
	을지로3가 95-19 ①	1,777,276,802			
	을지로3가 95-19 ②	1,777,276,802			
	입정동 268-2	1,240,641,761			
	을지로3가 95-12	10,725,410,624			
	을지로3가 95-13 외 1필지	2,927,534,396			
	을지로3가 95-13 외 3필지	29,698,954,552			
	입정동 246-1	963,261,580			
	을지로3가 335-1	755,084,169			
사업시행 예정자		194,306,424,435			

※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변경)되며,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 물건에 따라 산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확정(변경) 예정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총금액	304,500,200,000	• 대지비 + 공사비 + 대지조성비
대지비	110,193,775,565	• 추정 토지매입비
공사비	151,336,601,000	• 종전·종후자산 가격조사 보고서 금액 반영
대지조성비	42,969,823,435	• 철거비, 제세공과, 토지매입 관련 부대비용, 세입자 손실보상비, 부담금 등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153,163,599,000	• 종전·종후자산 가격조사 보고서 금액 반영
종전토지등의 추산액(A)	96,813,777,480	• 종전·종후자산 가격조사 보고서 금액 반영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B)	13,379,998,085	•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	194,306,424,435	• 공사비 + 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304,500,200,000	• A + B + C

※ 상기 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사업규약, 자금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9.5 ~13	집산 도로	177 (39)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 도로	공공 청사	2010.8.26. (서고 제306호)	을지로11길
기정	소로	1	b	10	집산 도로	307 (55)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 도로	-	2005.8.25. (서고 제255호)	충무로9길
기정	소로	3	1	7 ~7.5	집산 도로	126 (5)	을지로3가 104-13	을지로3가 96-2	일반 도로	-	2010.8.26. (서고 제306호)	충무로11길 을지로13길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마.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구분	지구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¹⁾	계획기반 시설 내 기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순부담율 (%) ²⁾	비 고
기정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2,186.4	1,916.6	269.8	273.0	-	27.3	515.5	21.2	-

주1) 을지로3가구역 공공청사(제12지구 공동) 규모 확대 설치-제공

주2)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율 산정 시 '시행구역 면적'에 실제 시행면적과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합산 적용

2)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확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기정	제10지구	을지로3가	소 계		542.8
			95-7	도로	6.9
			95-9		1.0
			95-10		3.8
			95-11		5.0
			95-12		75.0
			95-13		56.2
			95-14		47.7
			95-31		43.9
			95-33		30.3
			65-8 일원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273.0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2) 사업시행지구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 분		위 치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제10지구	입정동	246-1	도로	527.9	27.3	27.3	중구청	

※ 일부 편입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3) 국·공유지 매입대상

구 분		위 치		지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제10지구	을지로3가	335-1	도로	12,183.1	21.4	국(국토교통부)	일부편입

※ 일부 편입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2,186.4	-	1,916.6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원	7	-	-	7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2,186.4	-	1,916.6	을지로3가 95-12 일원	업무	55 이하	1,098 이하	최고 94m 이하	-
건축물 건폐율 완화에 관한 계획		• 건폐율 : 55% 이하 - 3,000㎡ 미만 소규모대지 건폐율 완화(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① + ② + ③ = 1,098% 이하 ① 기존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51.3%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완화량
		계 획 유 도	녹지 생태공간	소규모대지		소규모대지 개방형녹지		정량부여 (50%)		50%
				개방형녹지 설치		30% 초과 설치 시				
			친환경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정의무사항 1/2 이상 초과 설치 시		정량부여 (20%)		20%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¹⁾ 사용 시		정량부여 (20%)		20%
			보행가로 활성화	공공보행통로 등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부여 (계수 2.0)		29.3%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또는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률부여 (계수 2.0)		12%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부여 (20%)		20%
				주1)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따름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346.7% 적용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등 제공 (도로, 공공청사 규모 확대)		허용용적률× [(1.3×가중치×α토지) + (1.2×α건축물)]		800% × [(1.3 × 토지 242.5㎡ ÷ 1,916.6㎡) + (1.2 × 건축물 환산부지 273㎡ ÷ 1,916.6㎡)]		268.3%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		800% × [(322.1㎡ - 134.2㎡) ÷ 1,916.6㎡]		78.4%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최고높이 : ① + ② = 94.1m → 94m 이하 ① 개방형녹지율에 따른 높이 = [적정건폐율(50%)×(기준높이(70m)+20m)]÷(80%-개방형녹지율(30.4%)) = 90.7m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기준높이(70m)×(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187.9㎡)÷2)÷대지면적 = 3.4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공공보행 통로	•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구 동측 공공보행통로(2m) 지정 - 연결한 제11지구 및 대상지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하고 24시간 일반에 개방
	공개공지 (변경)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서측과 동측변 공개공지 지정 (금회 일부 선형 변경)
	개방형 녹지	• 지구 서측·동측 :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조성 ※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 제외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녹지 (공개공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도시경관	• 주변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방향 등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 차폐감 및 위압감이 완화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유도	
	환경보전	• 대지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으로 조성하고 불투수 면적 최소화 • 공사폐자재 분리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단지 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 조성시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재난방지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내진성능 확보 등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내 보행로와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부분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 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구역 내 자연지반을 최대한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자연성 포장 및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 고
				획 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원	2,186.4	1,916.6	269.8	-

※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86.4	-	2,186.4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86.4	-	2,186.4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대	55,151 (2,186.4)	-	-	1973.8.1 (건고 제317호)	집단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내 편입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9.5 ~13	집산 도로	177 (39)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 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 제306호)	을지로11길
기정	소로	1	b	10	집산 도로	307 (55)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 도로	-	2005.8.25. (서고 제255호)	충무로9길
기정	소로	3	1	7 ~7.5	집산 도로	126 (5)	을지로3가 104-13	을지로3가 96-2	일반 도로	-	2010.8.26. (서고 제306호)	충무로11길 을지로13길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공 청사	등주민센터	을지로3가동 65-10 일대	736.5	60 이하	600 이하	70 이하	2016.10.6 (서고 제310호)	-

주) 제10지구 공공청사 건축물 규모 확대 설치·제공(연면적 2,530.07㎡ 이상 부담)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허용용도 (A)	제10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제10지구	• 55% 이하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제10지구	• 1,098% 이하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10지구)

구분	인 센 티 브			비 고
기정	녹지생태공간	소규모대지 개방형녹지 설치	50%	151.3%
	친환경	전기차충전소 설치	20%	
		재활용 건축자재	20%	
	보행가로활성화	공공보행통로 등	29.3%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12%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20%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10지구)

구분	인 센 티 브			비 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조성	
기정	242.5㎡	환산부지 273.0㎡	187.9㎡	순부담률 21.2%
	(용적률 268.3%)		(용적률 78.4%)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 구 명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제10지구	• 94m 이하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건축한계선	중로 3-3, 소로 1-b, 소로 3-1번	• 폭 2m 지정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변경	공개공지	을지로11길변, 충무로9길변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보행결절점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서측과 동측변 공개공지 지정	결정도 참조 (금회 일부 선형 변경)
기정	전면공지	을지로11길변, 충무로9길변, 충무로11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보행공간 등으로 조성	결정도 참조
	공공 보행통로	대상지 동측	•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구 동측 공공보행통로(2m) 지정 - 연결한 제11지구 및 대상지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하고 24시간 일반에 개방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개방형 녹지	을지로11길변(서측) 충무로9길변(동측)	584	• 조성계획 : 지구 서측, 동측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개방형녹지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 제외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공개공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Ⅲ.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5호(2023.10.19.)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건축계획 수립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에서 정한 공개공지 범위 조정(공개공지 범위 내 법정 조경으로 확보되는 면적은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을 위해 (경미한)변경 결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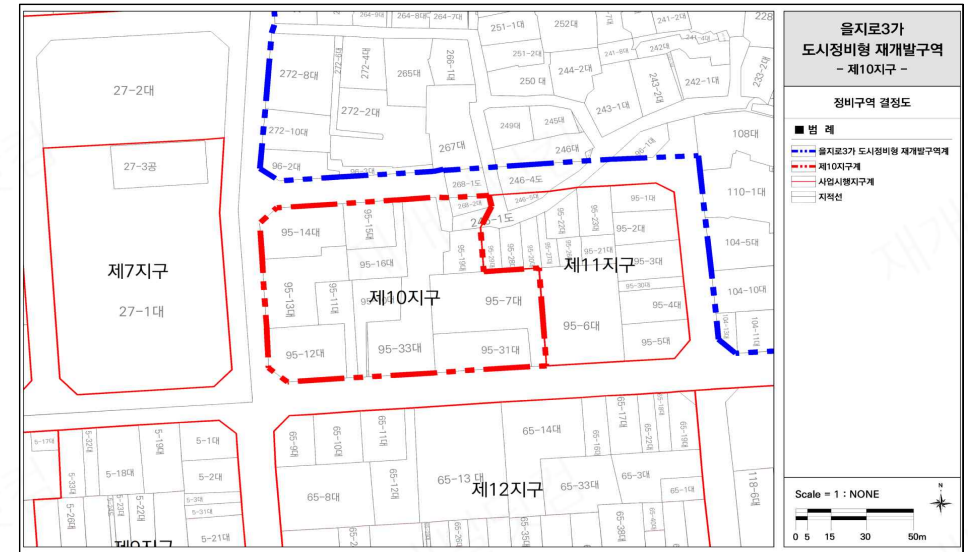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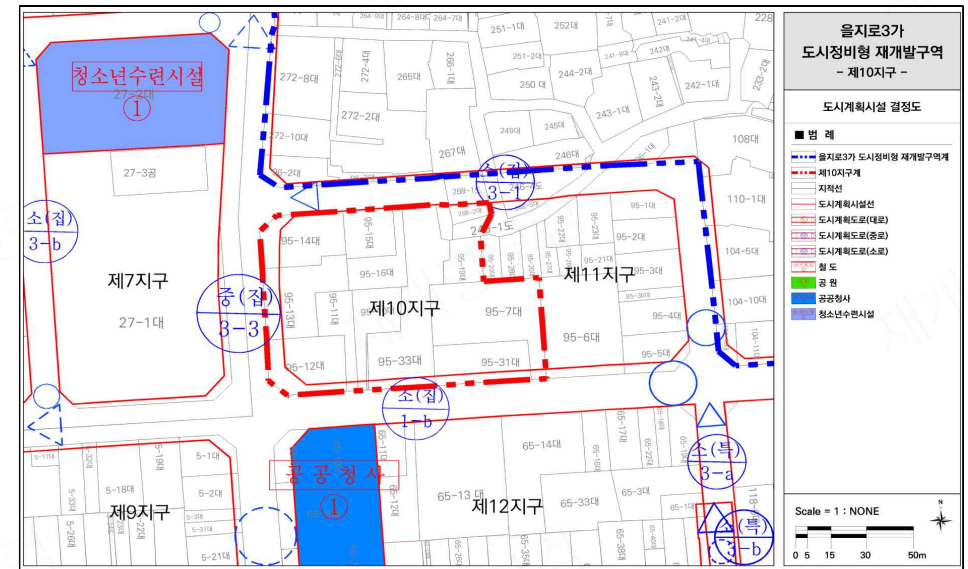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2133-4633)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57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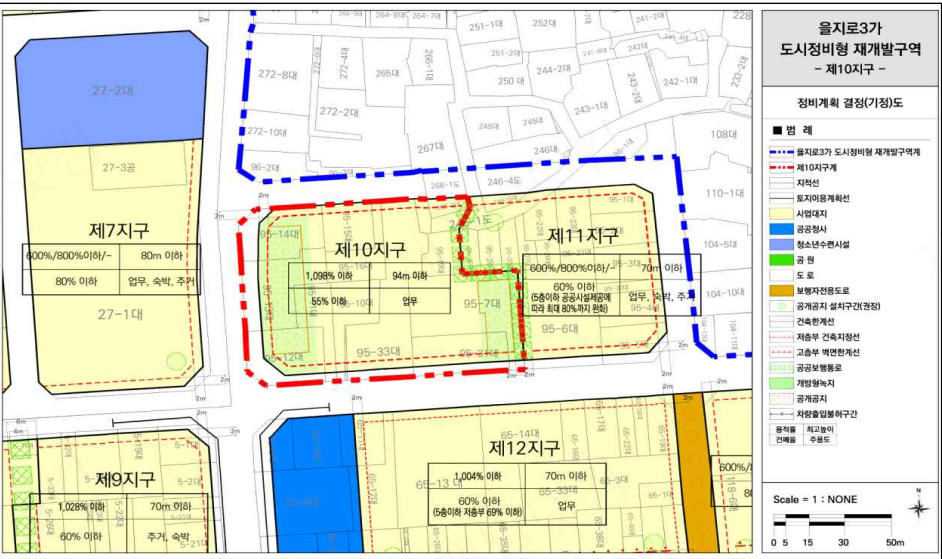
■ 정비구역(정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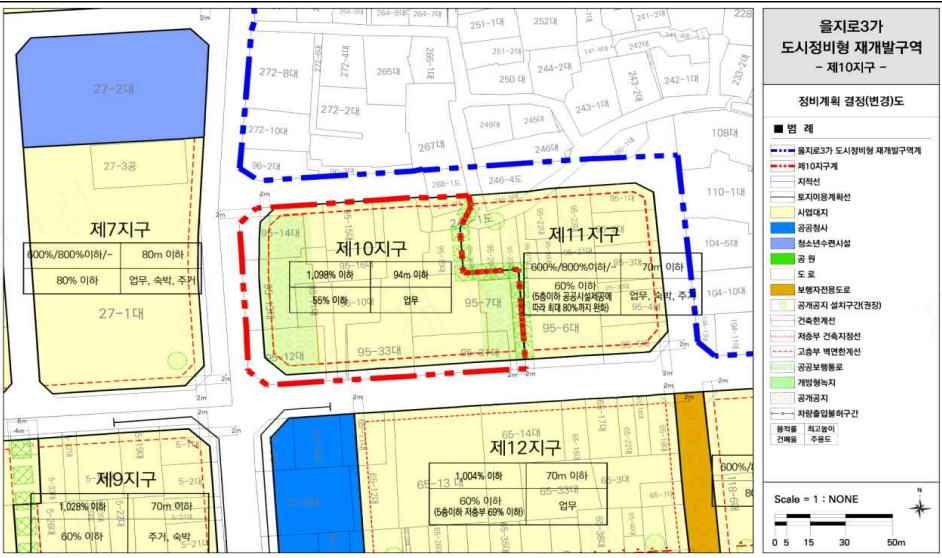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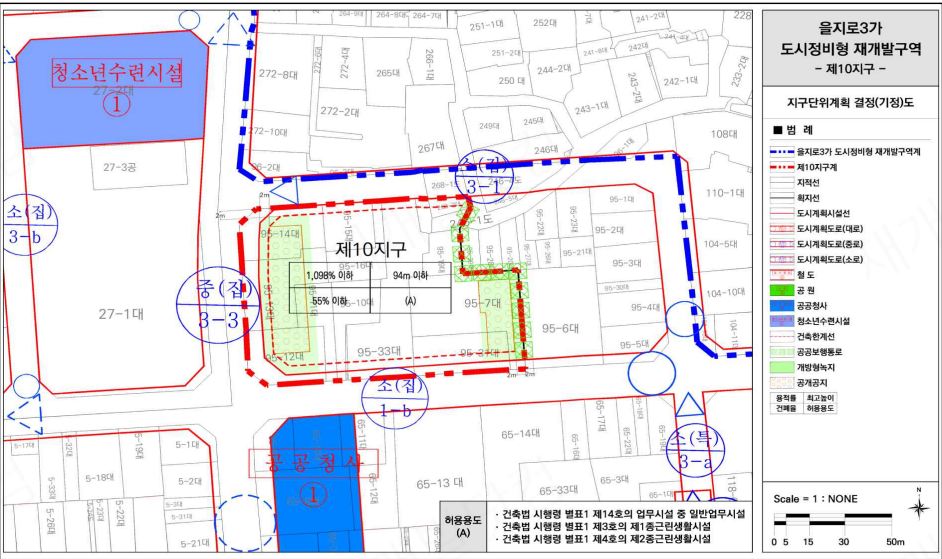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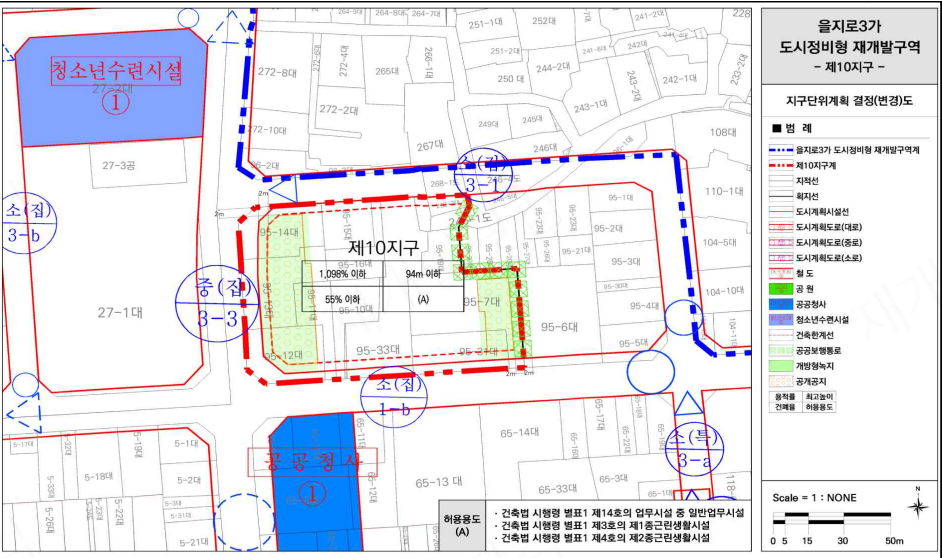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3호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함에 앞서 청문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 12. ~ 2024. 1. 27.(15일간)

2. 공고대상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근거
대기환경 전문공사사업	동림 글로벌(주) [최*기 외1인]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환경 기술 산업법 제29조

3. 청문일시 및 장소

- 가. 청문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나. 일 시 : 2024. 1. 29.(월) 14:00 ~ 16:00
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5층 환경과
라. 청문주재자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장 김남희

4.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의견제출기한 2024.1.26.까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본관 5층 환경과)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등록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위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